「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」

심 사 보 고 서

Ⅰ. 심사경과

1. **제출일자:** 2026년 10월 6일
2. **제 출 자:** 구 미 시 장
3. **회부일자:** 2026년 10월 7일
4. **상정일자:** 2026년 10월 14일
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Ⅱ. 제안 설명의 요지

1. 제안 설명자: 창업경제국장 김 영 철
2. 제안이유

○ 맞춤형 인적자원 육성, 주민 주도의 통합지역개발 수립을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역량강화 전담기관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사 무 명 :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○ **(추진근거)**

- 「구미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4조
-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16조

○ **(필요성)**

- 23년 “농촌협약” 공모선정되어 농촌협약체결을 위한 전제조건
- 전담기관으로 지정·운영하여 전문성 확보

다. 위탁사무 내용

○ 지역사회 역량강화 상시교육과정 운영

-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지자체 자체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컨설팅
- 농촌주민, 현장활동가 등 지역리더 육성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교육프로그램

○ 지역사회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

- 완료지구 사후관리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S/W사업지원
-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육, 포럼,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

○ 지역사회 생활서비스 공급·전달 지원사업

-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 및 농촌지역개발사업 기획, 이행지원
- 현장활동가가 다양한 생활서비스 공급, 전달과정에 참여프로그램 기획

라. 위탁기간 : 2027. 1. 1. ~ 12. 31.(1년간)

마. 소요예산 : 300백만원(2026년 기준)

바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재위탁

사. 적정성 검토 결과 : 적정 ※ 2026년 제5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(2026. 9. 28.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「구미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20조, 제24조

2)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제16조

나. 예산조치 : 2027년도 예산편성

다. 성과평가 결과 : 안건 참조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호 규

○ 본 동의안은

- 농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주민 주도의 통합지역개발을 지원하기 위해,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본 사업은 2023년 농촌협약 공모 선정에 따른 지속가능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기관 운영 사업으로,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(6개소)[1]와 지방이양사업 조성시설(2개소)[2]의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무임.

1)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(6개소)
- 무을춤새마을, 옥성활력센터, 옥성한듬골, 도개행복나눔센터, 도개모례가정, 해평정다운센터

2) 지방이양사업 조성시설(2개소)
- 선산뒷골체육공원, 고아읍 다목적문화센터

- 지역사회 역량강화 교육, 컨설팅, 마을아카데미 및 마을마켓 등 다양한 주민 주도형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완료지구의 자립도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-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농촌지역 생활서비스 전달의 접근성을 보완하고, 농촌자원 발굴 간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여 농촌협약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와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Ⅴ. 토 론 요 지: 생 략

Ⅵ. 소수의견의 요지:

- 위탁 사무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, 단년도 사업이 아닌 다년도(2년)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Ⅶ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